

적정 관세자등화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글·정태오 팀장 | 현대오일뱅크 대외정책팀

1. 국내 정유업계의 현황

국내 석유산업은 과거 정부의 수급통제 및 가격고시 등 강력한 규제와 통제 방식을 벗어나 1997년 이후, 석유시장의 경쟁구조 도입이라는 규제완화 정책 아래 시장 개방과 가격 자유화가 이뤄지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수 시장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지난 1998년 3개사로 시작한 국내 석유 수입사의 출현(시장점유율 0.05%)은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구도를 중대시켜 올 7월말 주요 유종 기준 13.5%(휘발유, 등/경유, 멍커-C)에 달하고 있을 만큼 시장 점유율을 날로 확대시켜 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유사는 1997년 자유화, 개방화와 외환위기에 따른 석유소비 침체와 수입사 가세등으로 사업 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저하되며 지난 2년간 총 1조원 이상의 적자를 실현하는 경영악화로 현재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유업계 매출액 및 세후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증감률(%)
법인기준	매출액	308,328	311,393	434,931	429,046	△1.4
	세후순익	6,291	7,161	△2,194	△2,377	적자지속
정유부문	매출액	278,722	281,924	402,286	393,796	△2.1
	세후순익	N/A	5,170	△4,792	△5,564	적자지속

이렇게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저조한데에는 수입제품이 급속히 시장을 잠식하여 국내시장 경쟁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다.

지난 2001년 한 해만해도 정유업계 전체적으로 5,5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주요 수입사들은 오히려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입사 제품의 점유율 확대와 국내 생산제품의 위축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한계시장인 국제 현물시장에 쏟아져 나온 각국의 잉여물량이 수입사에 의해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품 수입사들은 상대적으로 정제설비 투자없이 국제 현물시장의 시황에 따른 Hit & Run 전략을 통해 시장 유통 장악력을 높이고 낮은 관세차이로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춰 급속하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시장상황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경쟁의 가장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관세정책과 그나마 있는 법 규정 조차 철저한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2. 적정 관세차등화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최근 정유업계는 대정부, 대국회 등 백방으로 원유·석유제품 관세 차등화 폭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하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공정한 경쟁의 룰(Rule) 확립에 보다 깊은 이해와 힘을 기울이자는 의미에서 적정 관세제도가 이뤄져야 하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국내 원유 관세는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등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와 비교하면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즉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및 자국내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 수입시 무세 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수입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내 석유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원유관세의 경우, 유럽은 무세(원유대비 제품관세율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및 자국내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 수입시 무세 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수입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내 석유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수준: 3.5~4.7배), 미국 0.2%~0.4%(2~10배), 일본 0.9%(3.3~19.4배), 국내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도 2.5%(2~5배) 수준이며, 심지어 중국도 1.5%(4~8배)에 불과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적정 관세율 차이를 유지하는 것은 국내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글로벌 마인드(Global mind)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원유와 제품간 실행 관세율 차이는 2%(원유대비 제품관세율 수준: 1~1.4배)에 불과하다. 이것은 지난 1997년, 석유제품 수입자유화가 이뤄질때 수입자유화의 보완조치로 적정수준의 관세차등화가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뤄져야 했지만 정부의 세수부족 우려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여타 비경쟁 원재료의 관세율과 형평성의 결여 부분이다. 원재료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완

제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국내에서의 제품 생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증대, 국제수지 개선 및 국내 산업보호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기본 관세 원칙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국내 관세율 체계 역시 국내 경쟁이 없는 원재료에는 1~2%, 1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5%, 완제품에 대해서는 8%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어 철강, 목재, 설탕, 천연고무등 여타 비경쟁 원재료에 1~2%, 1차 가공품 5%, 완제품에 대해 8%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구조의 관세정책에서 유독 같은 비경쟁 원재료인 원유만 재정수입을 이유로 고율의 관세(5%)를 부과함으로써 관세 부과의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할 것이다.

세째, 적정 관세차등화는 소비자정체주의 유지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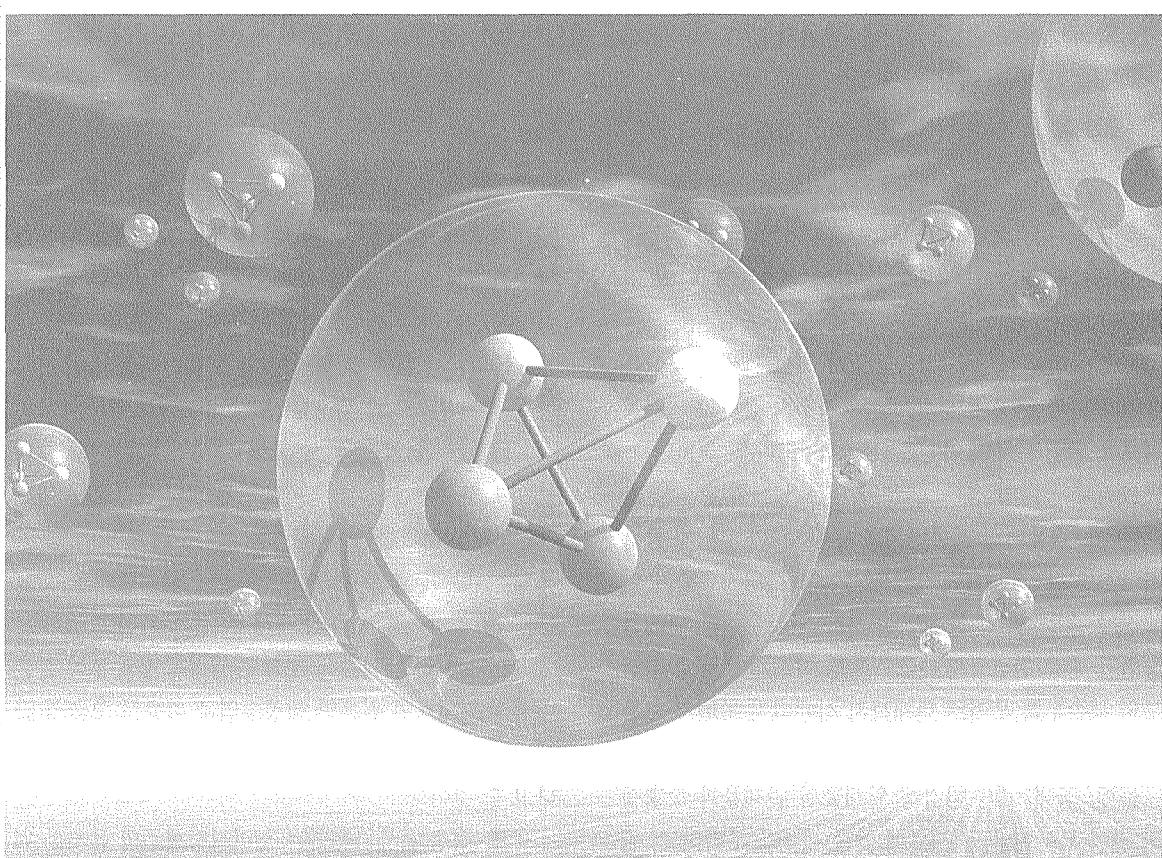


해서도 필요하다. 석유수입사들은 계절적 요인, Hit & Run 방식등에 따라 마진과 수익이 나는 특정 유종만 선택해 수입공급함에 따라 석유의 연산품 특성상 모든 유종을 생산해야 하는 국내 정유사에 비해 충분한 시장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석유수입사들은 이 점을 적극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해외 잉여제품을 국내 시장에 반입함으로써 국내시장 교란과 황폐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걸프전쟁시 원유가는 38\$/B수준이었으나 제품가는 70\$/B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보듯이 중동전쟁 등 비상사태시 해외 시장은 자국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석유제품 수출을 우선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국내 수입은 불가능할 것이며, 일부 물량 있다고 하여도 가격이 높아 현실적으로 수입판매 경제성이 없다.

이 경우 정유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지만 국내에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평상시에도 만약 소비자정제주의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락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내 생산감소는 국제시장 제품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오히려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넷째,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 강화로 저유황 경질유의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환경지향적인 정책 방향도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유사가 고도화 설비투자가 필수적인데 적정 관세차등화는 이러한 투자 장려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중유에 대한 황합유 기준을 정하여 저유황유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품의 경질화 추세는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곧 정제설비 고도화와 직결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정유사의 고도화 비율은 18%로 미국 70%, 영국과 독일 50%, 일본 3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형평성 있는 관세율 체계 부재로 국내 정유사는 향후 국내 석유소비의 경질화, 저유황화, 고품질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건설해야 할 고도화설비 투자를 위한 내부유보 이윤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수입사의 무차별 제품 수입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도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없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업체의 경우, 막대한 비용의 고도화 시설에 대한 투자

동기를 제공하고 대외개방이 이뤄진 현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정제업에 대한 지분투자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도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국내 석유시장의 공정 경쟁 룰(Rule) 확립을 위해 원유와 수입제품간 적정 관세율 책정이 필요하다. 석유수입사들은 자유화 이후 원유와 석유제품간 현행 관세율 격차가 불과 2%(소비)가격 기준 약 0.39% 차이)밖에 차이가 없어 수입물량을 갈수록 늘리고 있고 최근에는 비석유관련 기업들도 석유수입업에 동참하고 있어 마치 국내 석유시장이 아시아 지역 경제권내의 덤핑유 처리 시장화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원유관세 인하와 적정 수준의 원유와 제품간 관세차등폭 확대는 결코 국내 석

유수입사들은 자유화 이후 원유와 석유제품간 현행 관세율 격차가 불과 2%밖에 차이가 없어 수입물량을 갈수록 늘리고 있고 최근에는 비석유관련 기업들도 석유수입업에 동참하고 있어 마치 국내 석유시장이 아시아 지역 경제권내의 덤핑유 처리 시장화되고 있다.

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다든지 수입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선행한 정유사와 변동비 수준의 해외 Spot성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간 공정한 경쟁의 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섯째, 원유관세 인하는 국민 경제적으로 많은 플러스 효과가 발생한다. 원유관세가 1% 인하될 경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2W/l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생산이 국내에서 이뤄짐으로써 소비제품 수입보다는 원자재 도입 가공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및 GDP 증가와 고용창출등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한다.

즉 부가가치란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로서, 제품수입은 이러한 부가가치의 창출효과가 미미한데 비해 국내 생산은 그 효과가 막대하다.

2001년 정유사 및 수입사 부가가치율 비교

(출처: 석유협회 자료, 단위: 억원)

	정유사 계	A 수입사	B 수입사
매출액(A)	429,045	2,749	1,511
부가가치(B)	28,572	73	25
부가가치율(B/A)	6.7%	2.7%	1.7%

이상에서 업계가 직면한 적정 관세차등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데는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모두가 정확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불공정한 제도 개선에 대처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의 룰(Rule)이 시장에 바로 자리 잡게 되리라 확신한다. ♪